

가구 보육지원의 결정요인*

: 정부, 직장, 조부모의 재정적 지원 및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Support for Child Care

: The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Government, Employers, and Grandpar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강 사 박 선 욱**

교 수 정 순 희

Dep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

Lecturer : Park, Sunwook

Professor : Joung, Soon-H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much support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receive for child care along with the types of support they receive. The paper also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government, employers and grandparents of the children.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n=641) during the spring of 2009.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following methods: χ^2 , t-test, ANOVA, Logit analysis, and Tobit analysis using SPSS and STATA software.

The profile of support for child care showed that approximately 33 percent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received free or subsidized child care from the government, 12 percent received some forms of support for child care from the parents' employers, and 26 percent received support from grandparents either financially or in the form of free child care.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demonstrated that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receive child car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when they had a higher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and a lower level of family incom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support from employers were mother's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and family incom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support from grandparents of the children were the mother's age,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the type of residence, and the family type.

▲주요어(Key Words) : 보육(child care), 지원(support), 정부(government), 조부모(grandparents), 미취학자녀 가구(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55-C00054]

** 주저자 · 교신저자 : 박선욱 (E-mail : parksunw@gmail.com)

I. 서론

2009년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통계청, 2010a).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부부 증가, 여성들의 권익신장,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을 들 수 있다(한준상, 2006). 이 중에서 가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44%가 '보육비가 반으로 줄면 자녀를 더 낳겠다'라고 하였다(동아일보, 2008년 6월 20일자).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효율적인 병행과 가계의 자녀보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직장, 친인척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보육서비스지원은 가계의 보육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녀교육 학부모사이트인 맘스쿨은 학부모 462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하였는데, '100%무상보육(35.5%)', '엄마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보육정책지원(35.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25.%)'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09년 8월 13일자). 이와 같이 보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수준이나 우리 정부의 보육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한 보육료지원정책으로는 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보육지원은 대부분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어 왔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표(2009년)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보육비용 지원 확대, 영아보육 활성화,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부모의 육아부담을 낮추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지원정책의 재정지원방식이나 적정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받고 있는 보육 관련 지원의 정확한 실태와 요구도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지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보육지원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부보육지원 정책이나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가 대부분이고, 보육지원을 원

하는 가구, 즉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규모나 형태 그리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 기관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이영미, 2005) 자녀의 조부모 등 친인척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지원형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보육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의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직장(사업주), 조부모로부터의 재정적 보육지원의 수준 및 보육서비스 지원의 형태를 살펴보고, 각 보육지원 원천별로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정책이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지원 대상의 선정 및 특정한 보육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는 정부, 직장, 보육기관, 친척, 친구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보육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수정·발전을 해왔다. 현재(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지원정책으로는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등이 있다. 차등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50%이하인 가구는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을 지원해주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하위 70%(3인가족 기준, 월378만원) 이하인 계층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 만5세아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인 경우에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7만 2천원)가 지원된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데, 차등보육료에서 60%를 지원받는 아동은 40% 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한다(2010년 3월부터 확대 실시). 이외에 장애아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의 100%가 지원된다. 2010년 3월부터는 맞벌이가구의 보육료지원이 도입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대부분이다(문선화, 2005; 백선희, 2004; 이선애, 2005). 먼저 저소득가정과 영아보육지원정책을 고찰한 이선애(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의 요구도가 높은 저소득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고 보았으며 저소득가정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보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수당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문선화(2005)는 한국의 보육료 제도와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보육은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고 보고, 보육비용의 수요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분담 확대로의 전환과 보육비용의 가족 책임에서 보육비용의 사회화라는 공동 책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 정부와 사회의 보육지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구가 보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의 보육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2005)는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양육책임에 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3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98%)는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육아책임을 분담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모가 사회와 국가에 요구하는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영아와 유아를 둔 취업모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영아를 둔 취업모는 주로 보육시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증가를 기대하고 더불어 직장에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유아를 둔 취업모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아를 둔 취업모나 유아를 둔 취업모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지원에 대해서 살펴본 김효민 등(2006)은 직장보육시설이용자와 비직장보육시설이용자(시중의 보육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보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 직장보육시설이용자는 '이용자와 직장의 공동부담(44.7%)', '이용자와 국가가 공동부담'(43.7%)이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비직장보육시설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와 국가의 공동부담'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모가 자녀보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또는 직장이 보육책임을 분담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

아휴직제도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가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직장여성의 탁아실태를 분석한 이성희와 강성희(2002)의 연구에서는 기혼직장여성이 기업과 사회에 바라는 보육지원으로 직장 내 탁아시설 설치가 49%로 가장 많았고, 육아수당 지급이 25%, 육아휴직제도 실시가 22%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직장탁아시설 관련 사항으로는 직장탁아시설의 재정부담 형태로 직장경영주와 부모가 반반 부담(80%)이 가장 많았고, 직장경영주 전부 부담(16%)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자녀보육에 관련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의 재정적 보육지원과 친인척 보육지원에 대한 분석들로 이루어졌다(Giannarelli et al., 2003; Hunts & Avery, 1998; Snyder & Adelman, 2004). Giannarelli 등(2003)은 NSAF(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자료를 이용해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받는 자녀보육지원의 형태와 가구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 중 29%가 가계의 보육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육관련지원을 한 가지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에는 친인척(relative)의 지원,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 직장(사업주)의 지원,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부모로부터의 지원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가구 중 14%가 친인척으로부터 보육서비스지원을 받고 있어서 보육비지출이 없었고, 12%가 정부나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보육비 전액 또는 부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지원의 형태나 수준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가구(below 200% of the federal poverty level)는 일반가구에 비해서 보육관련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9% vs. 24%).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친인척 지원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보다는 정부 지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가구의 21%가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에 일반가구의 8%가 정부 지원을 받았다.

Snyder와 Adelman(2004)은 친인척 보육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만2세 이하의 영아인 경우, 저소득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정인 경우, 부모가 시간제 일을 하거나 비정규시간대(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에 친인척 보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관 보육(center-based care)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보육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이용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인(flexible schedules)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지원의 요구도가 높은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에서 친인척보육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구의 친인척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살펴본 Hunts와 Avery(1998)는 분석 결과, 친인척 보육은 대부분 자녀의

조부모에 의해서 제공되었고,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서 조부모 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의 아동들은 더 오랜 시간동안 조부모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대부분 정규 시간대(9am~5pm)대가 아닌 야간이나 휴일 등의 비정규 시간대에 보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부모 보육서비스는 보육기관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간대의 아동 보육을 담당함으로써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가구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관련 지원 연구는 대부분 정부 보육지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나 부모가 원하는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 이루어졌고, 수요자 측면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형태나 지원 수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가구가 받고 있는 보육지원으로 정부 보육지원, 직장(사업주) 보육지원, 조부모 보육지원 등의 다양한 보육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보육지원의 형태나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인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정부, 직장, 조부모로부터의 보육지원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부의 보육지원 실태와 정부지원의 결정요인은 어떠한가?

[1-1]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지원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1-2] 가구특성에 따라 정부의 보육지원 수급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1-3] 정부의 보육지원 수급여부와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실태와 직장지원의 결정요인은 어떠한가?

[2-1]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직장(사업주)으로부터 받는 보육지원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2-2] 가구특성에 따라 직장(사업주) 보육지원의

수급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2-3]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조부모의 보육지원 실태와 조부모지원의 결정요인은 어떠한가?

[3-1]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조부모로부터 받는 보육지원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3-2] 가구특성에 따라 조부모 보육지원의 수급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3-3] 조부모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어머니이다.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영어유치원, 직장보육시설 등의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동거/비동거하는 조부모, 친척, 타인(육아도우미, 입주도우미 등) 등의 보육서비스를 포함한다.

자료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마산시)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소비자 관련학과 학생들이 면접을 통하여 표기하거나 기관에 배부 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7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설문지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9년 4월 10일에서 5월 20일까지 95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695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총 641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의 규모와 형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측정도구는 Giannarelli 등(2003), 이영미(2005),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8차년도)(2005)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 및 질문지 등을 기초로 구성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지원은 크게 정부의 보육지원,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조부모로부터의 보육지원, 친구나 친지로부터의 보육지원, 기타 보육지원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되었다. 측정도구의 질문문항은 첫번째, 정부의 보육지원을

묻는 항목에서 현재 받고 있는 정부보육지원의 종류와 월평균 지원금액, 정부보육지원 이용에 대한 견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두번째,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직장보육지원의 종류와 월평균 지원금액, 직장보육지원에 대한 견해, 직장보육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세번째, 조부모의 보육지원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형태(금전적 지원 또는 보육서비스지원)와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월평균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네번째로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항목은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의 3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각 자녀별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미취학자녀 가구가 받는 보육지원으로서, 정부의 보육지원,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조부모의 보육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보육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

정부의 보육지원 여부 변수는 정부 보육지원정책(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아이돌보미사업의 보육서비스 지원 등)에 의한 보육지원을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1,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보육지원 수

준 변수는 정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의 한 달 평균 액수로 정의된다.

2)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

직장의 보육지원 여부 변수는 직장(사업주)으로부터 보육 지원을 한 종류라도 받고 있다면 1,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측정되었다.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종류로는 직장보육시설의 이용, 보육수당의 지급, 육아휴직제 이용 등을 포함한다. 직장의 보육지원 수준 변수는 직장(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의 한 달 평균 액수로 정의된다.

3) 조부모의 보육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

조부모의 보육지원 여부 변수는 미취학자녀의 조부모로부터 보육서비스 지원(자녀를 돌봐줌)이나 보육비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1, 받지 않는다면 0으로 측정되었다. 보육서비스 지원의 형태는 '아무런 비용 없이 자녀를 돌봐줌', '비용을 드리지만 시중의 기관보다 적은 비용을 드림', '시중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만큼(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드림', '비용은 드리지 않고 선물, 식사대접 등으로 대신함' 등을 포함한다. 조부모의 보육지원 수준 변수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육지원의 한 달 평균 액수로 정의된다.

4)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어머니 특성 변수인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포함되었고, 가구 특성 변수로서 미취학자녀 수,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서울/경기/광역시/도), 가족구조(핵가족/확대가족), 주택소유형태(자가/전세/월세/기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변수	정부 보육지원 여부	정부보육지원 받음=1, 정부보육지원 받지 않음=0	가변수
	정부 보육지원 수준	정부의 금전적 보육지원의 한 달 평균 금액	연속변수
	직장 보육지원 여부	직장(사업주) 지원 받음=1, 직장(사업주)지원 받지 않음=0	가변수
	직장 보육지원 수준	직장(사업주)의 금전적 보육지원의 한 달 평균 금액	연속변수
	조부모 보육지원 여부	조부모로부터 보육지원 받음=1, 조부모지원 받지 않음=0	가변수
	조부모 보육지원 수준	조부모의 금전적 보육지원의 한 달 평균 금액	연속변수
가구특성 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연속변수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하=0, 대졸 이상=1	가변수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0, 취업=1	가변수
	미취학자녀 수	가구의 미취학자녀의 수	연속변수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연속변수
	거주지역	광역시·도=0, 서울·경기=1	가변수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가변수
	주택소유형태	자가=0, 전세/월세/기타=1	가변수

5. 분석방법

가구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규모와 형태는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부보육지원, 직장(사업주)보육지원, 조부모보육지원 등 각 보육지원의 가구 특성별 차이는 χ^2 ,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보육지원 별로 수급 여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로짓(Binary Logit)분석을 하였다. 이항로짓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각 보육지원의 수급 여부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X_i + \epsilon_i$$

$$Y_i = 1 \text{ if } Y_i^* > 0$$

$$Y_i = 0 \text{ otherwise}$$

종속변수(Y_i)는 가구가 보육비지원을 받는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설정한다. X_i 와 β_i 는 각각 이항로짓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와 추정계수의 벡터이며, ϵ_i 는 오차항이다.

정부 보육지원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Tobit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보육지원의 수준(지원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_i^* = \beta_0 + \beta_1 X_i + \epsilon_i \text{ if } Y_i^* > 0$$

$$Y_i = 0 \text{ if } Y_i^* \leq 0$$

이 모델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이지만 일정한 영역에서는(예를 들어 0 이하)에서는 관측될 수 없어서 제한된 값만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한적 종속변수모델 (limited dependent variables model)이다(Maddala, 1992). 즉, $Y_i^* > 0$ 인 경우는 정부지원금액이 0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관찰 가능한 경우로서 Y_i 가 $\beta_0 + \beta_1 X_i + \epsilon_i$ 으로 표시되며, $Y_i^* \leq 0$ 인 경우는 정부지원금액이 없어서 관찰 불가능한 경우로서 Y_i 가 0으로 표시된다. 이 모델에서 Y_i^* 는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즉 지원금액이 0원인 많은 가구들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Tobit 모델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수의 값이 0인(즉,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표본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와 STATA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34.7세이고, 만30세~만34세 연령대가 41.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26.4%로 많았다.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44.3%가 취업을 한 상태였다.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4명이었고, 만 18세 미만 자녀수는 평균 1.7명이었다. 가구의 미취학자녀 수는 평균 1.36명이었고, 미취학자녀가 1명 있는 가구는 65.5%, 2명 있는 가구는 33.1%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2.8만원이었고, 월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전국 규모의 조사인 통계청(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0b)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9년 1/4분기 전국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소득은 400.3만원으로 조사대상가계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80.8%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고, 19.2%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를 띠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거주 가구가 전체의 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세인 경우가 34.4%로 많았다. 거주지역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49.1%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 '도' 순이었다.

2. 정부의 보육지원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가 받는 보육지원에는 정부의 보육지원,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자녀의 조부모로부터의 보육지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원이 있었다.¹⁾ 먼저 각 보육지원의 형태와 수준을 파악하고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후, 각 보육지원별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 정부의 보육지원 실태

조사대상가구인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종류와 규모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34.0%가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들의 금전적 보육지원의 총액은 월평균 17만 8천원(sd. 11.6)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는 가구 중 정부지원으로 가계의 자녀보육비를 전부 충당하고 있다는 가구는 18.3%로 나타났다. 정부보육지원의 종류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기본 보조금지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과 아이돌보미사업의 보육서비스 지원 등이 있었다. 그 중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육료

1) 친척·친구로부터 보육지원을 받는다고 한 응답자들(29명, 전체의 4.5%)도 있었지만 너무 소수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성^a

(N=641)

변 수	빈 도(%)	mean (sd)	변 수	빈 도(%)	mean (sd)
어머니 연령		34.69(4.03)	월평균 가구소득 ^b		402.8만원(199.5)
만30세 미만	56(8.8%)		300만원 미만	163(28.3)	
만30세~만34세	265(41.5%)		300~400만원 미만	143(24.8)	
만35세~만39세	245(38.3%)		400~500만원 미만	88(15.3)	
만 40세 이상	73(11.4%)		500만원 이상	182(31.6)	
어머니 교육수준			가족구조		
고졸 이하	165(26.4%)		핵가족	518(80.8%)	
전문대졸	158(25.3%)		확대가족	123(19.2%)	
대 졸	246(39.4%)				
대학원졸 이상	56(9.0%)		주택소유형태		
어머니 취업형태			자가	372(59.0%)	
미취업	349(55.7%)		전세	217(34.4%)	
취업	278(44.3%)		월세	20(3.2%)	
가구원수		4.03(.95)	기타	22(3.5%)	
만 18세미만 자녀 수		1.72(.65)	거주지역		
미취학 자녀수		1.36(.51)	서울	315(49.1%)	
1명	420(65.5%)		경기	78(12.2%)	
2명	212(33.1%)		광역시	147(22.9%)	
3명	9(1.4%)		도	101(15.8%)	

- a.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는 missing value로 인해 빈도의 전체 합이 641이 안됨.
 b. 월평균가구소득: 부부의 총소득, 집세, 사업소득, 이자, 보너스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월평균 소득. 극단값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월평균가구소득의 상위 1%(월평균소득 1,1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576가구가 분석에 포함됨.

<표 3> 정부의 보육지원

(N=641)

변 수	빈도(%)	지원받은 액수(만원) ^a	변 수	빈도(%)	지원받은 액수(만원) ^a
정부의 보육지원 받음	218(34.0%)	17.8(11.6)	정부 보육지원 종류	218(100.0%)	
정부의 보육지원 받지 않음	423(66.0%)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29(59.2%)	16.0(10.2)
			2.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4(24.8%)	19.4(12.6)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7(17.0%)	15.8(4.8)
			4.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4(1.8%)	무응답
정부지원으로 보육비 전부 충당함	40(18.3%)		5. 기본 보조금 지원	10(4.6%)	10.1(4.0)
정부지원으로 보육비 부분적으로 충당함	178(81.7%)		6. 셋째아 보육료지원	6(2.8%)	11.8(2.9)
			7.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 지원	0(0.0%)	없음
			8. 기타	4(1.8%)	12.6(9.2)

a. 지원받은 액수(만원)는 각 보육지원종류별로 해당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평균(표준편차)을 표시함.

지원을 해주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정부보육지원을 받는 218가구 중 59.2%로 가장 많았다. 각 보육지원 종류별로 해당 보육지원을 받는 가구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급받은 보육지원 액수를 조사하였는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월평균 16만원(sd. 10.2),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월평균 19만 4천원(sd. 12.6),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월평균 15만 8천원(sd. 4.8) 등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정부보육지원 수급 여부와 정부지원금 수준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부보육지원 수급 여부와 정부보육지원금 수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보육지원의 수급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특성은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보다 약 만1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도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

<표 4> 가구특성에 따른 정부보육지원 여부 및 보육지원금 수준

변 수	전체		정부의 보육지원 ^a		X ²	정부지원금액 ^b	
	n(%)		받음	받지 않음		평균(만원)	F
전 체	641(100.0)		218(100.0)	423(100.0)		17.8(11.6)	
어머니 연령	평균	34.7세(4.0)	34.1세(4.1)	35.0세(4.0)	10.09*	17.5(11.6)	4.17**
	만30세 미만	56(8.8)	29(6.4)	27(6.4)			
	만30세~만34세	265(41.5)	92(42.4)	173(41.0)			
	만35세~만39세	245(38.3)	73(33.6)	172(40.8)			
	만40세 이상	73(11.4)	23(10.6)	50(11.8)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5(26.4)	104(49.1)	61(14.8)	97.36***	17.5(11.6)	0.05
	전문대졸	158(25.3)	53(25.0)	105(25.4)			
	대졸	246(39.4)	49(23.1)	197(47.7)			
	대학원졸 이상	56(9.0)	6(2.8)	50(12.1)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349(55.7)	135(63.7)	214(51.6)	8.34**	17.9(11.9)	0.08
	취업	278(44.3)	77(36.3)	201(48.4)			
미취학 자녀수	평균	1.36명(0.51)	1.42명(0.55)	1.33명(0.48)	3.62	13.9(7.2)	39.22***
	1명	420(65.5)	132(60.6)	288(68.1)			
	2명 이상	221(34.5)	86(39.4)	135(31.9)			
월평균 가구소득 ^c	평균(만원)	402.8(199.5)	259.9(120.4)	476.5(192.2)	205.64***	19.1(12.7)	1.48
	300만원 미만	163(28.3)	124(63.3)	39(10.3)			
	300~400만원 미만	143(24.8)	46(23.5)	97(25.5)			
	400~500만원 미만	88(15.3)	17(8.7)	71(18.7)			
	500만원 이상	182(31.6)	9(4.6)	173(45.5)			
거주지역	서울/경기	393(61.3)	73(33.5)	320(75.7)	107.82***	17.3(11.5)	0.16
	광역시/도	248(38.7)	145(66.5)	103(24.3)			
가족구조	핵가족	518(80.8)	181(83.0)	337(79.7)	1.05	17.6(11.3)	0.22
	확대가족	123(19.2)	37(17.0)	86(20.3)			
주택 소유형태	자가	372(59.0)	95(44.6)	277(66.3)	27.37***	16.6(11.7)	1.11
	전세/월세/기타	259(41.0)	118(55.4)	141(33.7)			

*p<.05, **p<.01, ***p<.001

a. 카이제곱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이하인 cell은 없었음.

b. n=168. 정부로부터 보육지원을 받는 가구 중 보육지원금 액수에 응답한 168가구를 대상으로 함. 단위: 만원(sd).

c. 월평균가구소득: 극단값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월평균가구소득의 상위 1%(월평균소득 1,1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576가구가 분석에 포함됨.

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에서는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가 49.1%였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1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라도 정부보육지원의 수급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의 어머니들 중 63.7%가 미취업 상태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어머니들(51.6%)보다 미취업인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정부보육지원의 수급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은 259만 9천원,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은 476만 5천원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의 가구소득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의 가구소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의 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을 고려한 보육지원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라도 정부보육지원 수급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광역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6.5%로 나타나,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광역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 정부보육지원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 중 자가를 보유한 경우는 44.6%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의 66.3%보다 낮게 나타나 정부지원을 받는 집단이 받지 않는 집단보다 자가를 보유한 비율이 낮았다.

정부보육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정부보육지원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액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특성은 어머니 연령과 가구의 미취학 자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이 만30세 미만일 경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수는 정부지원의 수급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부지원금 수준은 미취학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취학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정부지원금이 월평균 24만 4천원이었고, 미취학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3만 9천원이었다.

3) 정부의 보육지원 여부 및 정부지원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미취학자녀 가구의 정부보육지원 수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미취학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가 정부의 보육지원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광역시·도에 거주하고, 자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 정부보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보육지원의 대상을 선정할 때 미취학자녀수, 가구소득, 자가보유 등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정부보육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9년 정부 보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나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어야 하고, 미취학자녀 수가 2명 이상 되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자가 보유 경우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으로 합산되므로 보육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과 정부보육지원간의 부적의 관계는 선행연구(Giannarelli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이 보편적인 성격을 띄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빗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보육지원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변수들 중 미취학 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이 정부의 보육지원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광역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 보

<표 5> 정부의 보육지원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Logit 분석

변수	B	Standard error	변수	B	Standard error
상수	15.734***	2.194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log(월평균가구소득)	-6.553*** .843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001	.029	거주지역	광역시·도=0 서울·경기=1	-1.057*** .248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0 대졸이상=1	-.276 .254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206 .300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099 .245	주택소유형태	자가=0 전세/월세/기타=1	.682** .238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559*	.225	Chi-square	246.394***	
			-2 Log likelihood	477.332	
			n	566	

*p< .05, **p<.01, ***p<.001

<표 6>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obit 분석

변수	Tobit Coefficient	Standard error	변수	Tobit Coefficient	Standard error
상수	141.947***	22.071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log(월평균가구소득)	-58.684*** 8.239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479	.320	거주지역	광역시·도=0 서울·경기=1	-6.413* 2.849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0 대졸이상=1	-1.178 2.919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2.530 3.342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509 2.691	주택소유형태	자가=0 전세/월세/기타=1	3.893 2.654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7.643**	2.419	Log likelihood	-802.934	
			Pseudo R Square	0.0859	
			n	566	
			Number left-censored	420	

*p< .05, **p<.01, ***p<.001

<표 7> 정부의 보육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N=641)

정부보육지원 받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정부보육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		정부보육지원제도의 개선될 점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1. 보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기준이 까다로움.	67(33.5%)	1.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함.	30(7.1%)	1.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함.	370(62.1%)
2. 보육지원을 받는 절차가 복잡함.	59(29.5%)	2.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만 지원 대상이 아님.	329(78.3%)	2.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함.	111(18.6%)
3. 자녀가 기관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인식되는 것이 꺼려짐.	23(11.5%)	3. 지원 받는 절차를 알지 못함.	29(6.9%)	3. 정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66(11.1%)
4. 보육지원제도의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움.	46(23.0%)	4. 지원 받는 절차를 알지만 이행 할 시간 없음.	8(1.9%)	4. 보육기관에서 정부지원에 대해 설명해야함.	41(6.9%)
5. 기타	5(2.5%)	5. 정부보육지원제도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음.	17(4.0%)	5. 기타	8(1.3%)
n	200(100.0%)	6. 기타	7(1.6%)	n	596(100.0%)

육지원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육지원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택소유형태는 정부보육지원금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가 보유 여부가 정부보육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나 일단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금 수준에는 별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취업과 정부 재정지원간의 정적인 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9년 우리나라 정부보육지원정책에서 보육지원 대상이나 보육지원금 수준을 정할 때 어머니 취업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실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로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보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육지원금 수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요구되는 보육 시간이나 보육비용이 일반가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표 7>은 조사대상자들의 정부보육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정부보육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보육지원을 받는 대상의 기준이 까다로워서'(33.5%) 정부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정부지원을 받는 절차가 복잡해서'(29.5%)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 '보육지원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고 한 응답자도 23.0%나 있어서 정부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정부보육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78.3%)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을 받는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 정부보육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9% 정도를 차지하였다. 정부보육지원제도의 개선될 점으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62.1%)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 절차의 간소화(18.6%)를 개선될 점으로 꼽았다.

즉,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보육지원을 받고 싶어도 대상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좀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장의 보육지원

1)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실태

조사대상자나 그 배우자의 직장(사업주)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종류와 규모가 <표 8>에 제시되어있다. 직장(사업주)으로부터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641가구 중 12.3%를 차지하였다. 직장으로부터 받는 보육지원의 종류로는 보육수당지급, 육아휴직제 이용, 직장보육시설의 이용(무료로 이용하거나 또는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등이 있었다. 그중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11.1%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제를 이용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소수였다. 보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의 월평균 보육수당금액은 약 14만 6천원(sd. 10.5)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나 그 배우자의 직장(사업주)으로부터 보육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우선 보육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현 직장에서 보육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86.7%)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조사대상자나 그 배우자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이 아닌 곳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해 보육수당 지급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이었는데 보육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9.5%를 차지하였다.

<표 8>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

(N=641)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지원받은 액수(만원) ^a
직장 보육지원 받음	79(12.3%)	보육수당 지급받음	71(11.1%)	14.6(10.5)
직장 보육지원 받지 않음	562(87.7%)	육아휴직제 이용	5(0.8%)	
		직장보육시설 이용	5(0.8%)	
		기타	2(0.3%)	

a. 지원받은 액수(만원)는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평균(표준편차)을 표시함.

<표 9> 직장(사업주)의 보육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N=641)

보육수당을 받지 않은 이유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1. 현 직장에서 보육수당이 지급 되지 않음.	411(86.7%)	1.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님.	305(64.6%)
2. 보육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45(9.5%)	2.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50(10.6%)
3. 자녀연령 기준에 의해 보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18(3.8%)	3.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서.	57(12.1%)
		4. 휴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5(5.3%)
		5. 정부의 지원금액이 적어서.	6(1.3%)
		6. 기타	29(6.1%)
n	474(100.0%)	n	472(100.0%)

<표 10> 가구특성에 따른 직장 보육지원 여부^a

변 수	전체		직장의 보육지원 ^b		X ²
	n(%)	받 음	받지 않음		
전 체	641(100.0)	79(100.0)	562(100.0)		
어머니 연령	평 균	34.7세(4.0)	35.1세(3.2)	34.6세(4.1)	6.90
	만30세 미만	56(8.8)	2(2.5)	54(9.6)	
	만30세~만34세	265(41.5)	34(43.0)	231(41.3)	
	만35세~만39세	245(38.3)	37(46.8)	208(37.1)	
	만40세 이상	73(11.4)	6(7.6)	67(12.0)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5(26.4)	8(10.4)	157(28.6)	26.13***
	전문대졸	158(25.3)	13(16.9)	145(26.5)	
	대 졸	246(39.4)	41(53.2)	205(37.4)	
	대학원졸 이상	56(9.0)	15(19.5)	41(7.5)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349(55.7)	32(40.5)	317(57.8)	8.41**
	취 업	278(44.3)	47(59.5)	231(42.2)	
미취학 자녀수	평 균	1.36명(0.51)	1.44명(0.55)	1.35명(0.50)	2.12
	1명	420(65.5)	46(58.2)	374(66.5)	
	2명 이상	221(34.5)	33(41.8)	188(33.5)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만원)	402.8(199.5)	512.3(173.8)	386.9(198.1)	44.94***
	300만원 미만	163(28.3)	2(2.7)	161(32.0)	
	300~400만원 미만	143(24.8)	12(16.4)	131(26.0)	
	400~500만원 미만	88(15.3)	15(20.5)	73(14.5)	
	500만원 이상	182(31.6)	44(60.3)	138(27.4)	
거주지역	서울/경기	393(61.3)	64(81.0)	329(58.5)	14.75***
	광역시/도	248(38.7)	15(19.0)	233(41.5)	
가족구조	핵가족	518(80.8)	59(74.7)	459(81.7)	2.18
	확대가족	123(19.2)	20(25.3)	103(18.3)	
주택 소유형태	자 가	372(59.0)	51(64.6)	321(58.2)	1.17
	전세/월세/기타	259(41.0)	28(35.4)	231(41.8)	

*p<.05, **p<.01, ***p<.001

a. 가구특성에 따른 직장 보육지원금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직장보육지원금 액수(보육수당)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적어(69명)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b. 카이제곱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이하인 cell은 없었음.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님'을 제외하면 '직장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서'(12.1%)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업무공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10.6%)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휴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3%), '정부의 지원금액이 적어서(1.3%)'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제 시행을 하지 않음, 경제적인 이유로(휴직으로 인한 가계비 부족), 자율출퇴근제로 대체 등이 있었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직장 보육지원 여부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직장보육지원 수급 여부에 대한 χ^2 분석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직장보육지원의 수급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특성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이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직장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직장지원을 받는 집단에서는 대졸(53.2%), 대학원졸(19.5%)이 많은 반면, 직장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에서는 고졸이하(28.6%)와 전문대졸(26.5%)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어머니 취

업상태에 따라서 직장보육지원 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직장지원을 받는 집단에서의 어머니 취업률(59.5%)이 직장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42.2%)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직장보육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512만원 vs. 387만원).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직장보육지원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장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81.0%로 직장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의 58.5%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직장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보육지원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항로짓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이 직장보육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와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직장보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적의 관계를 보였던 정부보육지원과는 달리 직장보육지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장보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장보육지원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Logit 분석

변 수	B	Standard error	변 수	B	Standard error
상수	-9.033***	2.114	월평균 가구소득	1.776**	.675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014	.035	거주지역	광역시·도=0 서울·경기=1	.508 .338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0 대졸이상=1	.885**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247 .322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534	주택소유형태	자기=0 전세/월세/기타=1	-.088 .286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543*	.255	Chi-square	47.717***	
			-2 Log likelihood	383.627	
			n	566	

*p< .05, **p<.01, ***p<.001

<표 12> 조부모의 보육지원

(N=641)

변 수	빈도(%)	지원받은 액수(만원) ^a	변 수	빈도(%)
조부모로부터 보육지원 받음	165(25.7%)	50.6(41.8)	보육서비스지원의 형태	158(100.0%)
조부모로부터 보육지원 받지 않음	476(74.3%)		1. 아무런 비용 없이 자녀를 돌봐주심.	65(41.1%)
금전적 보육지원	21(3.3%)		2. 비용을 드리지만 시중 기관보다 적은 비용 드림.	34(21.5%)
보육서비스 지원	158(24.6%)		3. 시중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드림.	35(22.2%)
			4. 비용은 드리지 않고 선물, 식사대접 등으로 대신함.	22(13.9%)
			5. 기타	2(1.3%)

a. 지원받은 액수(만원)는 금전적 보육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평균(표준편차)을 표시함.

4. 조부모의 보육지원

1) 조부모의 보육지원 실태

조사대상자나 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보육지원의 종류와 형태가 <표 12>에 제시되어있다. 자녀의 조부모로부터 보육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25.7%를 차지하였다. 조부모 보육지원의 종류에는 보육서비스지원(자녀를 돌봐줌)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데, 조부모로부터 보육서비스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4.6%였고, 금전적 지원을 받는 가구는 3.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부모로부터 보육지원을 받는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형태의 보육서비스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지원의 형태로는 '아무런 비용 없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가 보육서비스지원을 받는 가구들 중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중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드리는'(22.2%) 경우,

그리고 '비용을 드리지만 시중의 보육기관보다 적은 비용을 드리는'(21.5%)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보육비 명목으로 금전적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선물이나 식사대접 등으로 대신하는 가구(13.9%) 등이 있었다.

2) 가구특성에 따른 조부모 보육지원의 여부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조부모의 보육지원 여부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조부모 보육지원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특성은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상태, 거주지역, 가족구조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 연령은 조부모 보육지원을 받는 집단이 조부모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의 연령보다 만1세 정도 낮았다. 어머니 취업상태에 따라서 조부모 보육지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조부모지원을 받는 가구 어머니들의 취업비율이 68.8%로 조부모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 어머니들의 취업비율(36.0%)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시간적으로 보육지원의 요구도가 높은 취업모 가정에 대해

<표 13> 가구특성에 따른 조부모 보육지원 여부^a

변 수	전 체			X ²	
	n(%)	받음	받지 않음		
전 체	641(100.0)	165(100.0)	476(100.0)		
어머니 연령	평균	34.7세(4.0)	33.9세(4.1)	35.0세(4.0)	9.41*
	만30세 미만	56(8.8)	17(10.4)	39(8.2)	
	만30세~만34세	265(41.5)	82(50.0)	183(38.5)	
	만35세~만39세	245(38.3)	52(31.7)	193(40.6)	
	만40세 이상	73(11.4)	13(7.9)	60(12.6)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5(26.4)	35(21.6)	130(28.1)	3.92
	전문대졸	158(25.3)	41(25.3)	117(25.3)	
	대졸	246(39.4)	73(45.1)	173(37.4)	
	대학원졸 이상	56(9.0)	13(8.0)	43(9.3)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349(55.7)	50(31.3)	299(64.0)	51.87***
	취업	278(44.3)	110(68.8)	168(36.0)	
미취학 자녀수	평균	1.36명(0.51)	1.32명(0.50)	1.37명(0.51)	2.25
	1명	420(65.5)	116(70.3)	304(63.9)	
	2명 이상	221(34.5)	49(29.7)	172(36.1)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만원)	402.8(199.5)	430.5(194.6)	392.8(200.5)	6.49
	300만원 미만	163(28.3)	32(21.1)	131(30.9)	
	300~400만원 미만	143(24.8)	38(25.0)	105(24.8)	
	400~500만원 미만	88(15.3)	29(19.1)	59(13.9)	
	500만원 이상	182(31.6)	53(34.9)	129(30.4)	
거주지역	서울/경기	393(61.3)	115(69.7)	278(58.4)	6.59*
	광역시/도	248(38.7)	50(30.3)	198(41.6)	
가족구조	핵가족	518(80.8)	87(52.7)	431(90.5)	113.01***
	확대가족	123(19.2)	78(47.3)	45(9.5)	
주택 소유형태	자가	372(59.0)	97(59.5)	275(58.8)	0.03
	전세/월세/기타	259(41.0)	66(40.5)	193(41.2)	

*p<.05, **p<.01, ***p<.001

a. 가구특성에 따른 조부모의 금전적 지원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금전적 지원 액수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21명)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b. 카이제곱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이하인 cell은 없었음.

<표 14> 조부모의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Logit 분석

변 수	B	Standard error	변 수	B	Standard error
상수	-.470	1.672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 log(월평균가구소득)	.231 .584
어머니 연령	연속변수 -.082**	.030	거주지역	광역시·도=0 서울·경기=1	.648* .263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0 대졸이상=1	.227 .247	가족구조	핵가족=0 확대가족=1	2.083*** .252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0 취업=1	1.205*** .233	주택소유형태	자가=0 전세/월세/기타=1	.064 .236
미취학 자녀수	연속변수 -.069	.221	Chi-square	139.071***	
			-2 Log likelihood	511.380	
			n	566	

*p<.05, **p<.01, ***p<.001

조부모가 손자녀의 보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조부모지원을 받는 집단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9.7%로 조부모지원을 받지 않는 집단(58.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조부모지원을 받는 가구들에서 확대가족인 경우가 47.3%로 조부모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의 확대가족 비율인 9.5%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3) 조부모의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14>는 조사대상자 부모님으로부터의 보육지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상태, 거주지역, 가족구조가 조부모 보육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 특성에 따라서는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조부모 보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광역시·도 지역보다 조부모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인 경우 조부모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보육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보육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육지원은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광역시·도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특성인 자녀 수나 소득, 재산상태 등이 정부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반면, 조부모 보육지원은 어머니의 특성인 어머니 연령이나 어머니 취업상태 등이 지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보육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경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조부모의 보육서비스 지원은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돌아온 후의 시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부가적인 보육서비스의 형태를 많이 띤다. 보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는 아동들은 오후 2~3시쯤에 귀가하며 종일반 아동들은 6~7시 정도에 귀가하는데, 부모들의 퇴근시간은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 조부모 보육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조부모 보육지원은 대부분 자녀가 보육기관을 이용한 후 오후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져, 이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

<표 15>는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3점 척도(①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② 약간 필요함, ③ 매우 필요함)로 응답한 것의 평균값(sd)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의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2.6이상으로 나타나,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어머니들은 '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m=2.82)와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확충'(m=2.82)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m=2.81)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는 있지만 현재 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적인 실현'(m=2.78)을 바라고

<표 15>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

(N=641)

변 수	mean(sd.)	변 수	mean(sd.)
1. 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2.82(0.43)	6.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2.70(0.56)
2.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2.81(0.42)	7.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82(0.43)
3.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달리하는 차등보육료 제도의 적용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어야 한다.	2.70(0.54)	8. 시간연장 또는 종일제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2.60(0.61)
4. '아이돌보미사업'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64(0.58)	9.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2.78(0.49)
5.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65(0.57)	10. 취업모의 자녀보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6(0.48)
		11.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2.69(0.5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구와 보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지원의 증가와 영아를 위한 보육지원의 확대를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직장, 조부모의 보육지원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가구의 약 3분의 1이 정부의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으로 보육비용 전부를 충당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6.2%(정부보육지원을 받는 가구 중 18.3%)로 나타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보육지원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당시(2009년)에는 소득 하위 50%에 보육료전액지원(정부지원단가)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으로 보육비 전액을 충당하고 있는 가구가 6%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부모가 보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기본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교통비 등의 경비가 추가된 것으로 정부지원단가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액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액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으로 전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전액지원 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보육료납부에 지출한 비용만큼 지원이 되는 보육바우처카드를 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정부보육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수가 정부의 보육지원 대상 가구의 수치보다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부모 자신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관을 통한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보육수요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정부의 보육지원 중 셋째아이보육료지원, 아이돌보미사업의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는 거의 없었다. 아이돌보미사업의 경우에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받는 가구의 수가 소수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사업 시행 시의 문제점이나 지원받는 절차상의 복잡함 등을 파악하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보육지원의 결정요인에 대한 Logit과 Tobit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가 정부보육지원 수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정부보육정책은 보육지원의 대상을 선정할 때 미취학 자녀수, 가구소득, 자가보유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부보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정부지원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가구에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소득하위 50%까지만 둘째 아이의 경우 전액지원이 되었는데 3월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을 한다. 즉, 소득하위 70%인 경우 첫째아이는 30% 차등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는 30% 차등보육료 지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70%를 더 받아서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15명(2009년 기준)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명의 자녀도 출산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민간의 보육부담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아이의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액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 어머니의 취업은 정부 보육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 2009년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에서 보육지원 대상이나 수준을 결정할 때 어머니 취업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재까지 어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다. 맞벌이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가구소득은 높으나 자녀보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비용을 포함한 기대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낮으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서문희, 2009a). 다행히 이번 2010년 3월부터 차등보육료제도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조정해주는 방법(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으로 합산)으로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을 보는 맞벌이가구는 약 1만 8천 가구로 미미한 수준이다(연합뉴스, 2010년 2월 3일자).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구조나 제도, 아직도 자녀에 대한 일차적 양육책임이 여성이라는 인식 속에서 다자녀 출산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취업여부는 가장 중요한 보육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 인정액 조정폭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보육 지원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모를 위한 보육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분석 결과 직장(사업주)로부터는 전체 가구 중 12.3%가 보육관련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직장에서 보육지원을 받는 가구 중 대부분은 보육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육아휴직제의 이용이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직장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의 이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육수당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로서 남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직장여성들이 기업과 사회에 바라는 보육관련 지원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많았음(이성희·강성희, 2002)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수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서문희, 2009b). 따라서 취업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확대되어야 하겠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배우자)의 직장(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 직장에서 보육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85.8%)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소규모의 직장(사업장)에서 보육지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아님'(63.9%)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12.1%) 육아휴직제 이용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휴직제는 만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부여받을 수 있다(노동부 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 2010).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제의 실질적인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현재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영아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까지 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25.7%가 자녀의 조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 지원보다는 보육서비스지원(아무런 비용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돌봐줌)을 받았다. 즉, 조부모 보육지원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인적·사회적 자원의 한 종류로서 자녀의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분석결과, 조부모 보육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은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 거주지역, 가족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자녀수 등의 가구특성이 정부보육지원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조부모 보육지원을 결정짓는 요인은 어머니 특성과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어머니 연령이 낮고, 보육의 시간적 요구도가 높은 취업모인 경우에 조부모 보육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부모 보육지원은 대부분 가정내 보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제한적이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가정내보육)에 대한 지원으로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제 도입 단계이고 수혜를 받는 가구도 소수이다. 가정내보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정부와 사회에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보육지원제도나 정책은 가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와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적인 시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이 정부와 사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많은 부모들이 100%무상보육을 정부에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샘플의 표집 상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광역시로는 인천시 한 곳, 도 지역으로는 마산시 한 지역에서만 표집 되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가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녀연령과 같은 자녀특성 변수가 보육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보육지원의 형태나 규모 등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지원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연령대별(영아 vs. 유아) 특정한 보육수요와 보육지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정부보육지원정책 수립 시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가구에 비해 제한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보육의 시간적 요구도는 높은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자녀양육부담의 정도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형태와 보육지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후속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지원정책 수립 시 지원의 대상과 수준 및 지원의 형태 등을 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 특성별로 차별화된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효민·박정운·김양희(2006).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직장보육시설과 비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4(6), 79-86.
 내일신문(2009). 보육바우처제 투명성제고 도움. 2009. 8.13. 노동부. 원클릭 노동행정가이드 여성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1_new/main.jsp
 동아일보(2008). 적정교육비 16만원, 실제지출 30만원, 학부모

설문 '보육비 줄어들면 아이 더 낳겠다' 44%. 2008. 6. 20. 문선화(2005). 한국의 보육료 제도와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1(6), 401-427.
 백선희(2004). 보육료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6, 73-93.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서문희(2009a).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서문희(2009b).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13, 6-20.
 연합뉴스(2010). 3월부터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2010. 2. 3.
 이선애(2005). 저소득가정과 영아보육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41, 63-86.
 이성희·강성희(2002). 기혼직장여성의 탁아실태와 직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01-111.
 이영미(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95-104.
 통계청(2010a).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http://www.kosis.kr/>
 통계청(2010b).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http://www.kosis.kr/>
 한준상(2006). 저출산 예방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개선에 대하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2-1). 9-22.
 Giannarelli, L., Adelman, S., & Schmidt, S. (2003). *Getting help with child care expenses*(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6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Hunts, H. J., & Avery, R. J. (1998). Relatives as child care givers: After hours support for nontraditional work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4), 315-341.
 Maddala, G. S. (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
 Snyder, K., & Adelman. S. (2004). *The use of relative care while parents work: Findings from the 1999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Assessing the New Federalism Discussion Paper No. 04-09).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집 수 일 : 2010년 03월 14일
 □ 심 사 일 : 2010년 05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5월 24일